

환 경 부

징계 · 시정 요구

제 목 하수관거정비사업 준공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화천군

징계 대상자 화천군 ○○○○○○소(전 ○○○○○○소)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※ 훈계대상자 화천군 ○○○○과(전 ○○○○○○소)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징 계 종 류 경징계

내 용

화천군 ○○○○○○소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3. 9. 24.부터 감사일 현재까지, ○○○○과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1. 5. 1.부터 2014. 2. 28.까지 ○○○○○○소(현, ○○○○○○소) 하수도담당부서에서 “○○ 하수관거정비사업”의 실무담당자와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.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48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·물품·용역,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·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,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도록 규정되어 있다.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49조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, 계약서,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며,

「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」(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1094호)제4조(발주청, 감리원, 시공자의 기본임무)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·설계·발주·감리·시공·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, 감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기타 감리전문회사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,

동 지침서 “제5장 기성 및 준공검사관련 감리업무”의 제57조(기성 및 준공 검사자 임명)에 의하면, 발주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, 시방서, 설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 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필요 시 시설물 인수기관,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·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.

화천군 ○○○○○○소는 시설연장 39.2km의 “○○ 하수관거정비공사”를 추진하면서 2007. 12. 28. ○○○○(주) 외 2개사와 10,712백만 원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¹⁶⁷⁾하여 2013. 10. 28. 공사를 준공하였으며,

2008. 1. 16. (주)○○○○○○○와 “○○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공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”을 1,807백만 원에 계약체결¹⁶⁸⁾하여 시행하였고, 하수관로 품질확인을 위한 “○○ 하수관거 정비공사 CCTV 및 수밀시험 용역”을 2009. 6. 1. (주)○○○○○○○¹⁶⁹⁾과 기술용역도급계약을 체결¹⁷⁰⁾하여 하수관로 CCTV 및

167) 계약금액 10,712백만 원, 계약기간 2007. 12. 28.~2010. 6. 14.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13. 10. 25. 도급공사비 16,131백만 원, 계약기간 2007. 12. 28.~2013. 10. 28.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.

168) 계약금액 1,807백만 원, 계약기간 2008. 1. 18.~2011. 4. 3.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13. 9. 12. 기술용역도급비 2,914백만 원, 계약기간 2008. 1. 18.~2013. 10. 28.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.

169) (주)○○○○○○○○○은 2013. 1. 1. (주)○○○○○○○○○으로 병합됨.

170) 계약금액 334백만 원, 계약기간 2009. 6. 4.~2011. 11. 20.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13. 11. 6.에 기술용역도급비 309백만 원, 계약기간 2009. 6. 4.~2013. 11. 8.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.

수밀시험을 실시하였다.

시설공사 준공 당시 ○○○○(주) 외 2개사로 부터 시설공사의 준공도면, 준공내역서 등 준공성과품과 (주)○○○○○○○○으로 부터 하수관로 수밀시험 결과 및 내부를 촬영한 CCTV성과품 등을 제출받아, (주)○○○○○○의 검토를 받고, 검수한 후 시설공사는 2013. 10. 28. 기술용역은 2013. 11. 8.에 각각 준공하였다.

정부합동감사 시(2016. 9. 20.~2016. 10. 7.) 시설공사 준공 당시 시공사가 제출한 준공내역서, 준공도면, 관련서류 등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

1. 하수관로 공사비 지급 부적정

화천군 ○○○○○소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끝나면 계약서·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성과품을 확인한 후 준공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

“○○ 하수관거정비공사”를 추진하면서 하수관로 HO1511~HO1513구간(PVC이중벽관, L=116m)의 준공도서상의 관경 D250mm와 1호(D900mm)맨홀 4개소를 설계보다 작은 관경 D200mm와 소형맨홀(D400mm) 4개소로 시공하였으며

하수관로 HO3070~HO3310구간(PVC이중벽관, D250mm×L=9m)은 준공도면상의 연장 L=58.5m 보다 49.5m 짧게 시공하는 등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고 준공검사를 요청하였음에도, 감리단과 발주처는 이를 확인하여 수정요구 및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 함으로써, 공사비 5,585천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.

<하수관로 공사비 과다지급 현황>

(단위 : 원)

구 분	준공 도서	계약 이행	비 고
HO1511 ~HO1513	D250mm × L116m (1호맨홀 × 4개)	D200mm × L116m (소형맨홀 × 4개)	맨홀규격 상이
HO3070 ~HO3310	D250mm × L58.5m (1호맨홀 × 1개)	D250mm × L9m (맨홀 미설치)	관로(L=49.5m), 맨홀(1개소) 미시공
HO5121 ~HO5124	D250mm × L74.4m (1호맨홀 × 2개)	D200mm × L29.4m (소형맨홀 × 1개)	관로(L=45m), 맨홀(1개소) 미시공
직접공사비	490,710,100	485,458,440	5,251,660
간접공사비	17,640,050	17,306,837	333,213
합 계	508,350,150	502,765,277	5,584,873

※ 맨홀규격 : 소형(내경 D400mm), 1호(내경 D900mm)

2. 하수관로 품질확인(CCTV 검사) 부적정

하수관로 SPO2420~SPO2410구간(PVC이중벽관, D=250mm)에서 하수관 이음부 고무패킹이 이탈되는 등 11개소에서 부적합하게 시공된 부위가 확인되었으며, 동 구간에 대하여 감사 시 내부 CCTV 촬영 결과, 준공 시와 동일하게 하수관로 내부의 시공 부적합 부위가 확인되었다.

<CCTV 조사결과 부적합 시공 현황>

연번	구 간	준공 CCTV성과품		감사시 촬영	
		촬영일	분석결과	조사일	조사결과
1	SPO1150~ SPO1160	2009.11.27	이음부 결함(파손,침입수)	2016.09.21	맨홀 확인불가
2	HO2265~ HO2263	2011.06.08	관-맨홀접합부 총진 불량	2016.09.21	관-맨홀접합부 총진 불량
3	HO2420~ HO2410	2011.06.10	이음부 결함(고무패킹 이탈)	2016.09.21	이음부 결함(고무패킹 이탈)
4	HO2420~ HO2410	2011.06.10	이음부 결함(고무패킹 이탈)	2016.09.21	이음부 결함(고무패킹 이탈)
5	HO2440~ HO2441	2011.06.10	이음부 결함(고무패킹 이탈)	2016.09.21	이음부 결함(고무패킹 이탈)
6	HO2440~ HO2441	2011.06.10	이음부 결함(고무패킹 이탈)	2016.09.21	이음부 결함(고무패킹 이탈)
7	HO2541~ HO2540	2011.06.17	이음부 결함(고무패킹 이탈)	2016.09.21	이음부 결함(고무패킹 이탈)
8	HO2541~ HO2540	2011.06.17	이음부 결함(고무패킹 이탈)	2016.09.21	이음부 결함(고무패킹 이탈)
9	HO3070~ HO3310	2013.08.08	토사 퇴적	2016.09.21	토사 퇴적(맨홀 없음)
10	HO4340~ HO4341	2013.07.27	관 파손	2016.09.21	관 파손
11	HO5122~ HO5124	2013.08.08	관 파손	2016.09.21	관 파손

3. 하수관로 수밀시험 등 대가 지급 부적정

“○○ 하수관거정비공사 CCTV 및 수밀시험용역”을 추진하면서 84개소의 수밀시험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, 계약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용역을 준공하여,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가 17,459천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.

<하수관로 품질확인 대가 과다 지급 현황>

(단위 : 원)

구 분	단가	준공 내역		계약 이행		과다지급액
		수량	금액	수량	금액	
수밀시험	125,587 ~923,959	816개소	146,270,952	732개소	120,737,928	25,533,024
CCTV	2,815	35,997m	101,332,608	40,111m	112,912,465	-11,579,857
간접공사비	25.12%	1식	62,192,440	1식	58,685,969	3,506,471
합 계			309,796,000		292,336,362	17,459,638

위와 같이 화천군 ○○○○○○소는 「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」 등에 따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, 시방서, 설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음에도

준공 시 시공의 적정성 여부 및 책임감리용역의 적정 이행여부에 대한 검수·확인 등의 업무를 태만히 처리하여 공사비 5,585천원을 과다하게 지급하고, 하수관로 품질이 부적정한 상태로 시설공사를 준공하였으며, 하수관로 품질확인 대가 17,459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총 23,044천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.

화천군 “○○ 하수관거정비공사”의 준공 부적정과 관련하여 지방○○○○○○○○은 담당책임이, 지방○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은 실무책임이 있다.

조치할 사항 화천군수는

[징계] 위 관련자 중 ○○○을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훈계] 위 관련자 중 ○○○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시정] ① 하수관거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시공된 부위에 대하여 재시공 등의 조치를 취하고, 시공사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미시공 대가 558만원과 CCTV

및 수밀시험 용역사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품질확인 대가 1,745만원을 관련규정에 따라 회수하시기 바라며

②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그 대가를 부풀려 청구·수령한 시공사와 품질확인 용역사, 이에 대한 감리책임이 있는 책임감리회사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부실벌점 부과, 영업정지 등 적의 조치하시고,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